

# 정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

## 1일 축산분뇨 배출량(방류수 기준)

- 3kℓ 이상 농가..... BOD 2,000ppm 이하
  - 3kℓ 미만 농가..... BOD 2,500ppm 이하
- } 유지해야

○ ..... 보사부는 지난 5월 30일 보건사회부령 제802호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공 ..... ○  
 ○ ..... 포했다. .... ○  
 ○ ..... 보사부는 이날 공포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일 축산분뇨 배출량(방류수 기준)..... ○  
 ○ ..... 이 3kℓ 이상인 농가는 방류수의 BOD를 2,000ppm 이하로, 3kℓ 미만인 농가는 방 ..... ○  
 ○ ..... 류수의 BOD를 2,50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 ○  
 ○ ..... 보사부는 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양돈농가는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 ..... ○  
 ○ ..... 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와 방류수 수질시험 ..... ○  
 ○ ..... 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  
 ○ ..... 보사부는 이밖에도 축산폐수정화시설로는 ① 저장액비화 방법 ② 매립처분 방법 ③ 퇴 ..... ○  
 ○ ..... 비화 방법 ④ 토양침투 방법 ⑤ 살수여상 방법 ⑥ 산화구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축산 ..... ○  
 ○ ..... 폐수정화시설 설치기준은 환경청으로 하여금 처리대상 가축의 수를 고려하여 따로 정 ..... ○  
 ○ ..... 하도록 했다. .... ○  
 ○ ..... 다음은 5월 30일 보사부가 제정·공포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중 축산폐수 관련 ..... ○  
 ○ ..... 조항만 발췌 수록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 조(목적) : 이 규칙은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축산폐수정화시설) : 법 제 2 조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혐기성균에 의한 발효설비 및 그 부대설

비를 조립하여 만든 혐기성 소화처리시설

2. 호기성균에 의한 산화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호기성 산화처리시설

\*법 제 2 조 제 9 호 :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축산폐수정화시설** : ① 저장액비화방법 ② 매립처분방법 ③ 퇴비화 방법 ④ 토양침투방법 ⑤ 살수여상방법 ⑥ 산화구방법
- **관리기준** : 연1 회 이상 내부청소 및 방류수 수질 시험
-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제출
- **설치기준** : 처리대상가축의 수를 고려하여 환경청장이 따로 정함
- **준공검사** : 설치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신청서 2부 제출

3. 호기성균 또는 혐기성균에 의한 퇴비화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퇴비화시설.

4. 토양균에 의한 호기성 산화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산화처리시설

5. 매체를 이용한 호기성 산화처리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조립하여 만든 산화처리시설

6. 환경청장이 제1호 내지 제5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준하는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제21조(정화조 청소기준) : 법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전오니, 스크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폐쇄된 부위와 파이프 등에서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8조(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신고 등) :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

뇨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도서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자가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6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오수정화시설 <input type="checkbox"/> 분뇨정화조 <input type="checkbox"/>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④ 건물(축사)면적(㎡)	⑤ 건물(축사)용도	
	⑥ 소재지	⑦ 처리대상인원(축사의 경우 용유별마리수)	
시정공사	⑧ 상호(명칭)	⑨ 등록번호	계호
	⑩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⑪ 착공일		⑫ 완공예정일	
⑬ 관리인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⑮ 처리방법 및 개요		⑯ 처리용량(kℓ/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오수정화시설, <input type="checkbox"/> 분뇨정화조, <input type="checkbox"/>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자가설계도서를 포함한다) 1부			수 수 료 없 음
주) 분뇨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 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⑯ 처리용량란에는 설계용량을 기입한다.			

5104-74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

1987. 4. 10 승인

제29조(준공검사) : ① 법 제15조 제5항\*의

\*제15조 제4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5항 :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b>&lt;별지 제 7 호 서식&gt;</b>		(앞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input type="checkbox"/> 오수정화시설 <input type="checkbox"/> 분뇨정화조 <input type="checkbox"/> 축산폐수정화시설 <b>준공검사신청서</b>		처리기간 7일	처리기관(시·군)
신청인		신청인	협의(확인)기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건축과: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사회과 또는 청소과: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자		신청서작성	집수 (민원실)
④상호(명칭) ⑤등록번호 제 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발송(통보)	시설검사
⑦설치신고번호 제 호 ⑧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결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input type="checkbox"/> 오수정화시설, <input type="checkbox"/> 분뇨정화조, <input type="checkbox"/> 축산폐수정화시설 ) 의 준공검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준공검사필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5104-75민		190mm×268mm (신문용지 54g/m <sup>2</sup> )	
1987. 4. 17승인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 호 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 7 호 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8 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법 제 15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분

\*법 제15조 제 7 항: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수정화 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가축의 수를 고려하여 환경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한국공업규격중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케이에스에프 1507)에 의한다.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천정·바닥 및 벽은 내수성 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토압·수압·자책 중량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윗부분에는 지름 60센티미터 이상의 내수성 재료로 만든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윗부분이 뚜껑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1조(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

**\*법 제16조 제1항 :**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기적으로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처리용량 250킬로리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와 처리용량 5킬로리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그 용량이 1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피피엠 이하, 100킬로리터 이상 2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80피피엠 이하, 200킬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0피피엠 이하.

나) 분뇨정화조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제거효율이 50퍼센트 이상.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에서의 방류수의 수질은 1일 축산분뇨 배출량이 3킬로리터 미만인 축산시설의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천500피피엠 이하, 3킬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2천피피엠 이하.

3.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점검항목 등) :**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7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항목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일반폐기물시설의 점검항목

(제32조·제56조 관련)

5. 축산폐수정화시설

구분	점검항목
시	저장액비화방법 누수의 발생여부, 저류조의 저류량 및 저류기간, 발효된 분뇨(액비)의 살포상태.
	매립처분방법 분뇨매립상태, 복도뚜껑, 매립된 분뇨의 누출여부
	퇴비화방법 건조정도, 통기장치의 통기량, 저장시설에서의 퇴비화정도
	토양침투방법 부유물질 저하량, 암거집수설비의 집수정도
설	살수여상방법 살수여상시설 각 부위의 스킵 발생여부, 침전지의 오니침전량
	산화구방법 침전지의 오니침전량, 고액분리 또는 산화정도, 산화구에서의 산화정도
방류수의 수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율

제36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 ① 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 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제36조 관련)

업종	자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또는 재산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설계·시공업		○토목기사 1인 이상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1인 이상	○사무실 : 33제곱미터 이상 ○실험실 : 15제곱미터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로서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것 ○제도설비 1조 이상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 : 재산평가액 7천만원 이상

② 법 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

〈별표 10〉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65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20,000원	10,000원
2. 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	20,000원	10,000원
3. 분뇨처리법 허가	20,000원	10,000원
4. 쓰레기처리업 허가	20,000원	10,000원
5. 정화조청소업 허가	20,000원	10,000원
6.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40,000원	20,000원
7. 분뇨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20,000원	10,000원
8. 분뇨정화조 제조업 등록	40,000원	20,000원
9.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	40,000원	20,000원

호 서식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신청서를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환경지청장에게,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지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